

경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

□ 사업개요

- 추진근거 :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「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
- 정책목표 : 경기지역화폐 도입 확대를 통해 지역별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
- 발행주체 : 시장·군수*
* 대도시 쓸림현상을 방지하고, 기존에 상품권을 운영하던 시·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
- 발행형태 : 일반발행 및 정책발행
 - (일반발행) 인센티브 6~10% 지원, 충전한도 월 최대 100만원
 - (정책발행) 청년기본소득, 산후조리비, 아동수당 등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
- 발행방식 : 카드형, 지류형, 모바일형 ※ 발행 시군이 선택(복수선택 가능)
- 사 용 처 : 발행 시·군 내 연매출 10억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 가능
 - 백화점·대형마트·SSM 등 대규모 자본기업 및 유흥·사행업소 사용 제한

« 지역화폐 가맹점(사용처) 제한기준 »

구분	지역제한	매출제한	업종제한	대기업규제
제한기준	발행 시·군 내	연 매출액 10억원 초과 시	유흥·사행업소	·백화점, 대형마트, 복합쇼핑몰, 전문점, 쇼핑센터, SSM, 대기업 프랜차이즈
제한예외	공공산후조리원	전통시장 내 사업자, 산후조리원	-	·본사직영점이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점, 편의점

※ 가맹점 운영기준은 각 시·군의 지역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

경 제 실 지역금융과	지역금융과장	지역화폐정책팀장 지역화폐운영팀장	주무관
	김상수 8030-4710	천성수 8030-4731 성연국 8030-4741	정진혁 8030-4732 김성창 8030-4742